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4.

발 의 자 : 서영교 · 박희승 · 임오경
박지혜 · 이해식 · 장경태
박균택 · 정준호 · 양부남
김원이 · 윤준병 · 이성윤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, 외국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외국인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.

한편 최근 외국인에 대한 인신매매,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외국인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.

현재 법무부가 외국인 인권보호와 체류 허가 등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법무부와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,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둘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

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5조의3 신설).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3(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) 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와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인신매매,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 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
2.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 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
3.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4. 그 밖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의 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와 지방출입국·외

국인관서에 설치한 협의회의 구성·운영,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5조의3(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) 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와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 <u>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u> <u>1. 인신매매,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 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</u> <u>2.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이 법에 따른 허가 등에 관한 사항</u> <u>3.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</u>

	<u>또는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</u> <u>서의 장이 협의회에 부의하</u> <u>는 사항</u>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와 지방출입 국·외국인관서에 설치한 협의 회의 구성·운영,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-	---